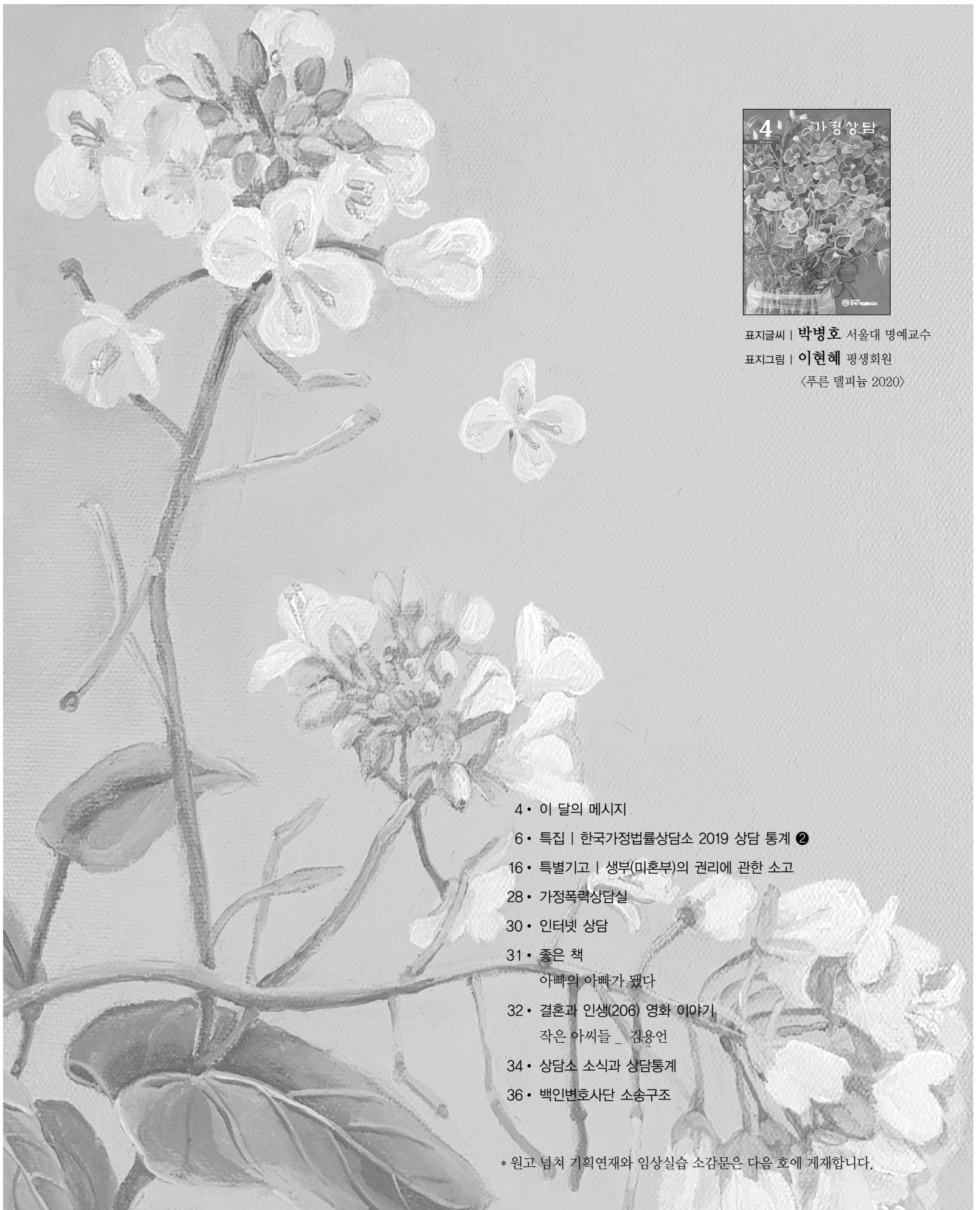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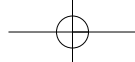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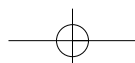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푸른 텔피늄 2020〉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 상담 통계 ②
- 16 • 특별기고 | 생부(미혼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
- 28 • 가정폭력상담실
- 30 • 인터넷 상담
- 31 • 좋은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
- 32 • 결혼과 인생(206) 영화 이야기
작은 아씨들 _ 김용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 원고 넘쳐 기획연재와 임상실습 소감문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이 달의 메시지



합계출산율 0.92의 시대를 맞아

.....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사회를 준비해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써 상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담통계와 인구통계의 추이를 보며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주의를 환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수차 언급한 바 있지만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와 낮아지는 혼인율 그리고 고령 사회로의 진전이 그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출산율의 저하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1만800건으로 이는 전년보다 2천100건 (2.0%) 증가한 것이며, 2014년 11만5천500건 이래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노년이혼이 늘면서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고도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34.7%(3만8천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담소의 상담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이혼상담의 경우 과거에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10년 전인 2009년 이후부터 30대는 감소하고 50대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후 남성은 연령대가 더 높아져 2016년부터는 60대 이상이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1순위로 올라섰고, 2019년에는 60대

이상이 43.5%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도 2009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8년에 처음으로 1명보다 적은 0.98명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추락한 것입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국가나 사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평균 출산율은 1.65명이었고 통계가 발표된 2017년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 뿐입니다. 0.92명이란 숫자는 역대 최저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저출산 지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출산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면서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지난 14년간 우리 사회는 저출산 대책에 185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해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경신함으로써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출산, 보육 및 젠더 정책 전반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지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인구문제 전반을 검토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진지하게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은 사치다’ ‘부부 둘이 살기도 벅차다. 아이까지는 여력이 없다’ ‘둘이 함께 벌어야 하는데 아이는 누가 키워주나’ ‘돈 없이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교육현실을 어떻게 하나’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세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책이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에 담긴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출산하면 뭘 해주고 둘째, 셋째 아이부터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근시안적 대책부터 손봐야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부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회의 구성원을 건강하고 책임감 있게 키워낸다는 자세로 중장단기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산율을 비롯한 가정문제 전반은 사회의 근간을 세우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선거와 같은 정쟁을 뛰어 넘는 것이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남북문제에 비견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 전체가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아직은 채 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않는 시점이지만 어떻게든 이 사태 또한 지나갈 것이며, 이 문제는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도 상담 통계 ② | 다문화 가정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1.7배 증가
 외국인 아내 방문 38.2%, 한국인 남편 방문 61.8%
 한국인 남편은 기타, 자신의 폭력, 아내의 가출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 기타, 자신의 폭력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

- 20일 만에 집 나가 연락 끊은 아내, 어찌해야 하나요?

- 아내가 입국한 지 20일 만에 집을 나간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올 4월에 베트남 여성과 혼인했는데 20일 만에 상대가 집을 나갔다. 그 전에도 두 번 외국인 여성과 혼인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잘 살아보려고 많이 애썼다. 그런데 상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 버려 온 가족이 상심이 크다. 나는 현재 한 달에 300만 원 가량 벌고 작지만 집도 한 채 있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상대가 집을 나간 것을 보니 계획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 같다. 중개업소에서도 황당해 하지만 사람 속까지 알 수 없으니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혼하는 방법은?

외국인 아내

- 강제출국 시키겠다는 협박에 폭행당해도 참고 살아!

- 남편의 폭력, 무시, 협박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혼인 초부터 남편에게 폭행당했다. 아이가 생기면 나아질까 했으나 남편은 아이들마저 폭행하였다. 큰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아 아동보호 기관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남편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출국 시켜버리겠다고 수시로 나를 협박하였다. 그것 때문에 몇 년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식에 갔다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봐 가보지도 못했다.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래도 애들 아 빠이기에 처벌받게 되는 것이 걱정되어 그냥 돌아오곤 하였다. 시댁과 남편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는 그저 무시당해도 되는 그런 존재였다.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커가는 아이들이 남편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닮게 될까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한국인 아내

– 입국과 취업을 위해 나와 결혼! 친구들 취업까지 계속 요청!

● 남편이 친구들 난민지원신청과 취업을 계속 요구해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30대 한국 여성)

남편은 아프리카에서 왔다.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다. 혼인 직후 남편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왔다. 또한, 남편은 내게 친구들의 난민지원신청 서류 작성, 번역 등과 취업 지원을 계속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아 취업 며칠 만에 대부분 잘렸다. 남편은 내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게 도움만 요청하였다. 내가 체류를 위한 신원보증을 해 주어야 하기 때 문인지 이혼에는 응하지 않는다. 이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얼마 전 친정으로 왔다. 이혼하고 싶다.

외국인 남편

– 의부증이 심해 하루에도 수십 통 씩 전화 걸어와!

● 아내의 의부증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40대 일본 남성)

혼인 후 아내와 계속된 갈등이 있었다. 아내와 성격 및 성향이 전혀 맞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쉬지 않고 20통 이상씩 전화를 걸었고 내가 사업상 만나는 여성들을 모두 의심했다. 최근 길에서 아내와 다뤘는데 아내가 내 팔을 할퀴고 꼬집어 상해를 입었다. 보다 못한 행인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였다. 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오히려 내게 위자료를 요구해왔고, 내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줄 수도 있으나 돈만 받고 집에서 안 나갈까 걱정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상담 총 건수는 1,229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851건(69.2%),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378건(30.8%)이었다¹⁾.

상담 건수, 실제 이혼 건수의 88.5%에 달해

2020년 3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6,899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388건이었다. 본 상담소 서울 본부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1,229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88.5%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은 다양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이혼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또한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문의하였다. 한편,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자 혼인무효나 취소 절차를 우선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상담

– 주요 발견 사항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1.7배 증가
(2009년 36.1%→2019년 61.8%)

외국인 아내 방문 38.2%, 한국인 남편 방문 61.8%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상담보다 1.6배 더 많아

한국인 남편은 50대, 외국인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아

한국인 남편이 17세~30세 이상 연상 27.4%

(일반가정 이혼상담 3.9%)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교육정도 낮아

(한국인 남편의 24.1%, 외국인 아내의 19.8% 중졸 이하)

재혼 비율 43.8%(일반가정 이혼상담 16.9%)

1)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여성 176명, 남성 8명)도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으로 표기함.

한국인 남편의 78.7%, 외국인 아내의 95.6%

보유재산 없어 매우 빈곤

혼인신고 후 45.8% 별거 중

한국인 남편은 기타, 자신의 폭력, 아내의 가출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 기타, 자신의 폭력 순으로 상담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외국인 아내 38.2%, 한국인 남편 61.8%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더 많이 상담소 찾아와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851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25건(38.2%),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526건(61.8%)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6배 많았다. 다문화가정 상담에 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아(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2017년 65.2%, 2018년 68.4%, 2019년 61.8%)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한국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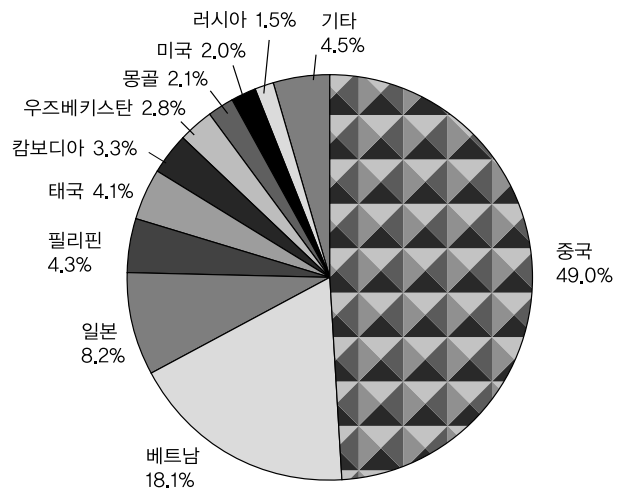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851명 중 중국이 417명(49.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54명(18.1%), 일본 70명(8.2%), 필리핀 37명(4.3%), 태국 35명(4.1%), 캄보디아 28명(3.3%), 우즈베키스탄 24명(2.8%), 몽골 18명(2.1%), 미국 17명(2.0%)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5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7.4%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264명(31.0%), 40대 227명



아내의 본국

(26.7%), 50대 151명(17.7%), 20대 90명(10.6%), 60대 이상 89명(10.5%)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대 305명(35.8%), 40대 232명(27.3%), 60대 이상 224명(26.3%), 30대 60명(7.1%), 20대 20명(2.3%)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59명(6.9%),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690명(81.1%),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69명(8.1%), 미상인 경우는 33명(3.9%)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7~30년 차이가 189명(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7~8년 100명(14.5%), 1~2년 78명(11.3%), 15~16년 68명(9.9%), 9~10년 65명(9.4%), 11~12년 54명(7.8%), 13~14년 51명(7.4%), 3~4년 37명(5.4%), 5~6년 36명(5.2%), 31년 이상 12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5~6년 차이가 50명(7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4년 8명(11.6%), 1~2년 7명(10.1%), 9~10년 · 13~14년 각 2명(각 2.9%) 순으로 나타났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12년 전 혼인하였다. 아내와는 16살 차이가 난다. 아이가 둘 있는데 아내는 밖으로만 돌았다. 수시로 베트남에 다녀왔고, 와서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친구집 등을 전전했다. 올 초 내가 반대했는데도 일하러 간다며 떠났

고, 한 달에 한번 집에 왔다. 일을 한다고 해서 생활비를 내놓은 것도 아니다. 본인 옷 사 입고 놀러다니기 바빴다. 한 달 전 와서는 이혼을 요구했다. 위치 추적을 해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한국에 와 있는 아내 친구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지난 번 베트남에서 올 때 다른 남자와 함께 왔다고 한다. 아내를 추궁했더니 그 남자와 살겠냐며 대놓고 이혼해달라고 한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남편과 23살 차이가 난다. 남편은 초혼이었고, 나는 재혼이었다. 10년 같이 살았는데 남편에게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수술도 어렵고 산다 해도 1년밖에 못 산다고 한다. 현재 정신도 맑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갑자기 남편 누나들이 남편과의 만남을 막고 이혼을 종용하고 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오랜 기간 같이 살았는데 이대로 쫓겨날 것 같아 두렵다. 내 몫의 재산을 받고 이혼하고 싶다.

명), 한국인 남편의 58.6%(499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제적 빈곤으로 갈등을 겪는 상담 사례 (내담자 20대 캄보디아 여성)

나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왔다. 남편과 24살 차이가 난다. 남편이 한국에서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와보니 아무 것도 없었다. 남편은 허리 통증이 심해 일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한 후 2년 전 집을 나왔다. 남편이 반대했지만 먹고 살아야 했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보내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돈을 벌어도 생활비 제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막상 돈을 벌자 그 후부터 남편은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하였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하였다. 돈 문제로 많이 다투다 보니 정이 떨어져 같이 살기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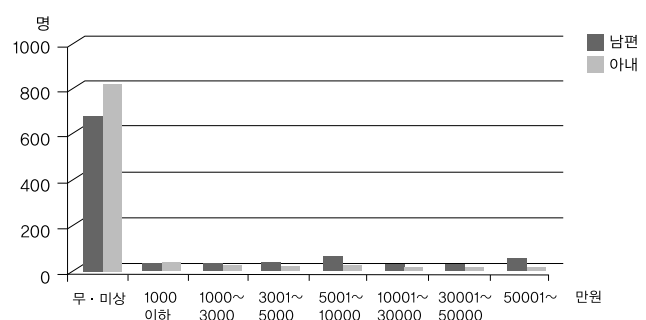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에 비해 교육정도 낮은 한국인 남편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37.4%(318명), 남편 32.7%(278명)]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6.2%(53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10.9%(93명)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0.9%(8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1.3%(11명)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이하의 비율도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한국인 남편 24.1%, 외국인 아내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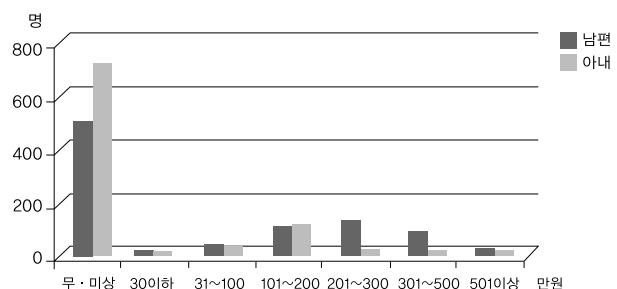
부부 모두 보유재산 없고 월수입 낮아 경제적 빈곤 심각

외국인 아내는 주부(306명, 36.0%), 한국인 남편은 회사원(153명, 18.0%)이 가장 많았다. 한편, 주부와 무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85.4%, 한국인 남편은 49.1%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95.6%(814명)와 한국인 남편의 78.7%(670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3.5%(711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재산보유액별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월수입별



● 생활고를 이유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상담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9년 전 혼인하였다. 그런데 서로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해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나는 특별한 기술도, 배운 것도 없었고 그나마 무릎이 좋지 않아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 급기야 4년 전 아내가 생활고를 못 견뎌 집을 나갔다. 아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나는 현재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이다. 서로 이렇게 된 것 이혼하고 싶다.

다문화가정 상담 재혼 비율 43.8%,
일반 이혼상담보다 재혼 비율 높아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28.3%(241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7.9%(67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15.0%(128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0.9%(178명), 미상 27.8%(237명)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일반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16.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43.8%(373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3.1%(26명),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9.0%(77명)로 나타났다.

여성이 재혼인 경우는 35.9%(306명)[남성 초혼-여성 재혼(15.0%, 128명), 남성 재혼-여성 재혼(20.9%, 178명)]이었고, 재혼한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9.0%(77명)이었다. 외국인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을 때에는 본국에 생활비를 보내는 문제,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 양육비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남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혼 후 전혼자녀 입양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는데 당시 남편은 본인을 미혼이라고 소개하였으나 한참 후에 알고 보니 자녀가 두 명이나 있었다. 남편은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다.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은 지속적으로 내게 돈을 요구하였고, 특히 내 전혼자녀를 데려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약점 잡아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시부모에게 보낸 돈도 1억 원이 넘는다. 한국어를 전혀 몰라 살고 있는 아파트의 권리관계나 남편의 재산상황을 모른다. 남편은 수시로 나와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

● 재혼 후 경제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2년 전 혼인했고 16살 차이가 난다. 나와 아내 모두 재혼이었고, 아내는 5살 딸을 데려왔다. 아내는 돈 버는 것에 집착하였고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칼로 자해를 한 적도 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일을 하러 나간 다 하여 좀 천천히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법상을 뒤엎어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다. 내가 놀라 119에 신고한 사이 아내는 112에 신고해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뒤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쉼터에 있다.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니 아내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나는 이혼을 원하고 아이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

전체의 45.8%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3.2%(27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3.4%(29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8.3%(71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7.8%(66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19.7%(168명), 10년 이상은 39.3%(334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45.8%(390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8.5%(18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년 이상~10년 미만 21.8%(85명), 2년 이상~3년 미만 14.4%(56명), 1년 이상~2년 미만 5.4%(21명), 1년 미만 5.1%(20명), 3년 이상~5년 미만 4.9%(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56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41명에 달했다. 즉,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73.2%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639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349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54.6%에 달하였다. 국적취득에 있어서 결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별거 시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러 소송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폭행으로 집을 나았는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온 사례(내담자 20대 중국 여성)

결혼한 지 4년 되었다. 남편은 알코올중독이다. 8개월 전 남편의 폭언,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왔다. 아이와 함께 나오고 싶었으나 남편이 아이를 주지 않아 우선 혼자 나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이를 전 남편이 아는 언니에게 문자로 이혼 판결문을 보내왔다.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했고,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남편이 가졌다. 나도 이혼을 원하나 남편은 알코올중독자라 아이를 키울 수 없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 몫의 재산도 분할 받았으면 한다.

●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을 요구해온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다. 4년 전 아는 사람 소개로 3개월간 연애했던 후 결혼하게 되었다.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난다. 연애했을 때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다른 점이 많았다. 문화가 달라 그러려니 하며 맞춰 보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다. 결혼한 지 2달되었을 때 아내가 필리핀 친정에 다녀온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이후 오지 않았다. 아내는 더 이상 나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귀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만 보낸 후 연락을 끊었다. 서로 연락하지 않은 지 3년이 넘어 전혀 소식을 알지 못한다. 이혼하는 방법은?

2. 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사유,
자신의 폭력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은 기타사유, 자신의 폭력,
외국인 아내의 가출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의 상담 사유(총 325명)

- 1위 '남편의 폭력' (민법 제840조 3호)(31.7%, 103명)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무시/모욕, 시가와의 갈등, 경제갈등, 성격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 (6호)(20.9%, 68명)
- 3위 '자신이 남편 폭행' (내담자 3호)(19.1%, 62명)

한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총 526명)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불신·성격차이, 거짓말·성적갈등 등이 우선 순위임)' (6호)(39.4%, 207명)
- 2위 '자신이 아내 폭행' (내담자 3호)(25.1%, 132명)
- 3위 '아내의 가출' (2호)(16.2%, 85명)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3호 '남편의 폭력'이 31.7%(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9%(68명), 3호 '자신이 남편 폭행' 19.1%(6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19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3,435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폭언, 알콜중독, 빚 순 43.1%, 1,479명), 3호(남편의 폭력 31.9%, 1,095명), 1호(남편의 외도 13.3%, 457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사유와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31.7%)을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제시해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아내들이 여전히 한국인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남편 뜻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외국인 아내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68명 중 '장기별거'가 26.5%(18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시/모욕' 14.7%(10명), '시가와의 갈등' 11.8%(8명), '경제갈등' 7.4%(5명), '성격차이' 5.9%(4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 '알콜중독' · '폭언' · '기물파손' 각 4.4%(각 3명), '생활무능력' 2.9%(2명), '결혼조건속임' · '빚' · '도박' · '신체적 질병' · '주박' · '찾은 가출' · '처가와의 갈등' · '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1.5%(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 무시/모욕, 시가와의 갈등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나는 19년 전 중국에서 왔다. 혼인 기간 내내 시댁에서 나를 중국인이라고 무시했다. 특히 손윗동서의 무시가 심했다. 남편은 방관했고, 이 일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화를 내며 나

를 때리기도 하였다.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급기야 암 진단까지 받았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이 칼을 들고 나를 위협했다. 동서 때문에라도 못 살겠다 하니 이번에는 남편이 동서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나가 큰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시댁식구들이 모두 몰려와 내게 욕설을 해댔다. 경찰에 신고한 후 접근금지 신청을 해두었는데 재산을 안 받아도 좋으니 빠르게 이혼하고 싶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 폭언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남편은 퇴근하면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 가사와 육아에는 무관심했다. 주사도 심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마구 해댔다.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여러 번 있다. 지난 명절 때 아들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찾아뵙지 못하겠다고 전화했더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이 병원에 쫓아와 나를 폭행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서 집을 챙기러 집에 갔더니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이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

● 자신이 남편을 폭행에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

21살 때 한국에 왔다. 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다. 상대 방은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먹는 술꾼이었다. 돈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래도 참으며 10년 넘게 살았다. 지긋지긋해서 다 필요 없으니 아이들만 달라고 했는데도 이혼해 주지 않았다. 이제는 나도 경력이 쌓여 내가 원하는 날 쉴 수 있지만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너무 힘이 들고 화가 나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을 때렸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9.4%(207명)로 가

장 많았다. 다음은 내담자 3호 ‘자신이 아내 폭행’ 25.1%(132명), 2호 ‘아내의 가출’ 16.2%(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07명 중 ‘장기별거’가 74.9%(15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3.9%(8명), ‘불신’ · ‘성격차이’ 각 2.9%(각 6명), ‘거짓말’ · ‘성적갈등’ 각 1.9%(각 4명), ‘잡은 가출’ · ‘애정상실’ · ‘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1.4%(각 3명), ‘경제갈등’ · ‘도박’ · ‘종교갈등’ · ‘신체적 질병’ 각 1.0%(각 2명), ‘결혼조건속임’ · ‘빚’ · ‘전혼자녀와의 갈등’ · ‘고부갈등’ 각 0.5%(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19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1,348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폭언, 성적갈등 순 64.5%, 870명), 2호(아내의 가출 15.8%, 213명), 1호(아내의 외도 10.5%, 142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들 중 25.1%는 자신이 외국인 아내를 폭행해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상담해 왔다. 일반 이혼상담과는 다르게 다문화가정 상담에서는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에 대한 자신의 폭력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체류 또는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외국인 아내들이 자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 올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인 남편들은 자신의 폭력 이전에 아내의 외도나 가출, 불성실한 생활 등이 지속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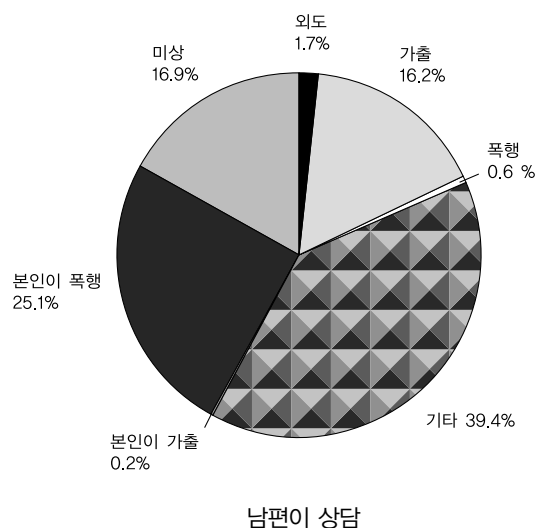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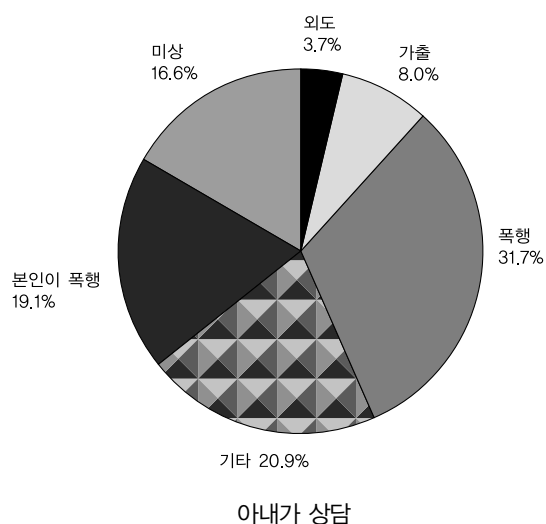
어 왔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아내의 유책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았다.

● 아내의 거짓말, 가출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말레이시아 여성과 혼인하였다. 상대방은 살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자주 하였다. 급기야 작년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며칠 전 상대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해왔다. 내게 위자료도 청구해왔다. 상대방은 내가 외도와 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 내 어머니까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거짓이다. 단 한 번도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없다.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것도 자신이 없다.

● 자신이 아내를 폭행해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내가 교육열이 있는 편인데 아내는 관심이 없다. 막내아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 지난달에도 아들이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게임만 하고 있어서 화를 냈다. 그러자 아내가 아들 편을 들어 욕하는 마음에 아들과 아내를 폭행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외할머니 집으로 도망가 버렸다. 아내는 그런 아들을 데려오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또 아내를 폭행했고, 딸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아내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나도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 아내가 가출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 남성)

아내와 혼인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아내는 20세인데 베트남에서 왔고, 나와는 18살 차이가 난다. 아내가 아직 어리고 국제결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배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길지 않은 혼인 기간 동안 아내는 부모님이 보고 싶다며 여러 차례 베트남에 다녀왔다. 베트남에 가 있는 동안 여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으나 sns를 보니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2달 전 아내는 또 베트남에 갔다 온다고 하고서는 집을 나간 후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상담(총 1,229건) 중 30.8%(378건)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상담보다 10.8배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상담 378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2건(8.5%),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346건(91.5%)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10.8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집트, 호주 순 그 외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말리, 베트남, 이라크, 대만, 케냐,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네팔, 시리아, 가나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378명 중 중국이 109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 83명(22.0%), 미국 39명(10.3%), 프랑스 28명(7.4%), 이집트 22명(5.8%), 호주 15명(4.0%), 파키스탄 13명(3.4%), 방글라데시 11명(2.9%), 말리 10명(2.6%), 베트남 8명(2.1%), 캐나다 6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순이었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집트, 호주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집트, 호주,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말리, 베트남, 이라크, 대만, 케냐,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네팔, 시리아, 가나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상담에서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본국보다 여건이 나은 한국에서 정착하고자 하나 여러 갈등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편의 본국이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경제적 사정이 비교적 나은 경우에는 한국인 아내가 혼인신고 후 남편의 본국으로 출국을 원하였으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출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케냐, 튀니지, 네팔, 시리아, 가나 등 아프리카나 동남아인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인 여성과 혼인해 이혼에 대한 법적인 정리 절차만 남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 남편이 한국에서 기술을 습득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인 아내와 갈등이 있어 체류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총 32명)

- 1위 '자신이 아내 폭행' (내담자 3호)(50.0%, 16명)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거짓말, 경제갈등, 성격차이, 성적갈등, 의부증, 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 (6호)(21.9%, 7명)
- 3위 '아내의 외도' · '아내의 가출' (1호 · 2호)(각 6.3%, 각 2명)

한국인 아내의 상담 사유(총 346명)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폭언, 경제갈등, 생활양식 등 가치관

- 차이 등이 우선 순위임)' (6호)(52.3%, 181명)
 2위 '남편의 폭력' (3호)(16.5%, 57명)
 3위 '남편의 가출' (2호)(15.3%, 53명)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내담자 3호 '자신이 아내 폭행'이 50.0%(1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1.9%(7명), 1호 '아내의 외도' · 2호 '아내의 가출' 각 6.3%(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보면,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폭행해 이혼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국인 남편은 한국인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자신의 한국 내 체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하였다. 한편, 외국인 남편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명 중 '거짓말', '경제갈등', '성격차이', '성적갈등', '의부중', '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가 각 1건씩 있었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52.3%(18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호 '남편의 폭력' 16.5%(57명), 2호 '남편의 가출' 15.3%(5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81명 중 '장기별거'가 77.9%(14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4.4%(8명), '폭언' 3.3%(6명), '경제갈등' · '생활양식 등 가치관 차이' 각 2.2%(각 4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 사항 요약

- 2019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상담 총 건수는 1,229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851건(69.2%),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378건(30.8%)이었다.
- 2020년 3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6,899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388건이었다. 본 상담소 서울 본부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1,229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88.5%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851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25건(38.2%),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526건(61.8%)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6배 많았다.
-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851명 중 중국이 417명(49.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54명(18.1%), 일본 70명(8.2%), 필리핀 37명(4.3%), 태국 35명(4.1%), 캄보디아 28명(3.3%), 우즈베키스탄 24명(2.8%), 몽골 18명(2.1%), 미국 17명(2.0%) 순으로 나타났다.
-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일반가정은 남편이 3~4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 연상 중 17~30년 차이, 일반가정 3.9%/다문화가정 27.4%).
-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6.9%였으나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43.8%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2.6배 가량 높았다.
-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교육정도면에서도 남편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경우가 일반가정에 비해 더 많았다(남편 초졸 이하, 일반가정 8.3%/다문화가정 12.2%).
- 외국인 아내의 95.6%(814명)와 한국인 남편의 78.7%(670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3.5%(711명), 한국인 남편의 58.6%(499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45.8%(390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8.5%(18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년 이상~10년 미만 21.8%(85명), 2년 이상~3년 미만 14.4%(56명), 1년 이상~2년 미만 5.4%(21명), 1년 미만 5.1%(20명), 3년 이상~5년 미만 4.9%(1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사유, 자신의 폭력 순으로 상담이 많았고, 한국인 남편은 기타사유, 자신의 폭력, 외국인 아내의 가출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김진영 상담위원



생부(미혼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

— 생부의 출생신고와 친생부인권을 중심으로 —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생부(미혼부)¹⁾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생부에게 친생부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이 주제에 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양육하려는 의지를 가진 생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한 사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가족법 분야에서도 이제 생부의 권리에 관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생부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사회적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계

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자녀의 모가 생부와 관계에서 임신했을 때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그 자녀는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출생신고를 할 때도 모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의 남편은 자녀의 양육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반면, 생부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모의 남편과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소멸시키고 생부와 자녀 사이에서 새롭게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발생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켜야 하는데, 현행 민법상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상 친생부인권자인 모의 남편이나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생부는 자녀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나 모의 남편이 자녀에게 아예 관심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조차도 생부에게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생부는 자녀를 인지할 수 없게 되고, 생부와 자녀는 법률상의 부

1) 민법에서는 혼인외의 자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생부(生父)라고 한다(민법 제855조). 생부는 자녀의 모 이외의 다른 여자와 혼인 중일 수도 있고, 미혼일 수도 있다. 미혼부(未婚父)란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생부와 미혼부가 동의어인 것은 아니다. 생부는 미혼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요즘 사회적으로 생부보다는 미혼부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민법에 따라 생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생부의 개념에 미혼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관계가 아닌 타인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고 생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안정을 해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에서는 생부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II), 이어서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와 그 행사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 서술한다(III).

II. 생부의 출생신고

1. 현행 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중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외의 자녀의 경우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제46조 제1항, 제2항²⁾). 따라서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생부는 아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1항에서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여기서 부(父)란 혼인외의 자녀의 생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생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혼인외의 자녀를 바로 인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녀에 대해서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에 의해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모가 생부의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다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임신,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민법³⁾ 제844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는 출생과 더불어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생부가 인지를 하려

면 우선 모의 남편과 자녀 사이에 발생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즉 모나 모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47조 제1항). 따라서 위의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 따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때로 한정된다.

따라서 위의 규정을 보면 모가 생부와 관계에서 임신했을 때 다른 남자와 혼인상태에 있지만 않았다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생부가 실제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2. 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법원 실무의 변화와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1) 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법원 선례의 변화

생부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녀의 모가 생부와 교제하다가 임신, 출산한 후 자녀를 생부에게 맡기고 연락을 단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생부가 모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출생신고서에 모의 인적사항(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 법원실무의 태도이기 때문이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06-2호, 2011. 6. 30. 제정). 그러나 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법원이 원래부터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호적선례 제2-80호(1987. 1. 16. 제정)는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었으며(“모의 성명과 본적은 물론 그 소재도 알 수 없는 혼인외 출생자를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하여는 출생신고서 기타 사항란에 ‘모는 성명불상임’ 이라고 기재하여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이러한 태도는 위의 가족관계등록선례가 2011년에 제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다만 그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이다. 호적선례 제2-77호(1988. 1. 12. 제정)은

2) 이외에 제3항에 동거친족 등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동조 제4항).

3) 이하에서 민법 조문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생부가 모불상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하되, “그 모가 유부의 여자가 아님을 증명케 하여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생부가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생부의 입장에서 모가 “유부의 여자가 아님”(즉 모가 임신했을 때 혼인 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 후에 제정된 호적선례 제2-78호(1989. 5. 8. 제정)는 생부가 모불상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생부가 모불상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6월 30일에 위에서 본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106-2호가 제정되면서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생부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굳이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생부와 자녀는 사실상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은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부는 사실상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아니며, 타인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자녀의 복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⁵⁾

(2) 재판절차를 통한 부자관계의 창설

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 생부들은 여러 번의 재판절차를 거쳐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에 우선 생부는 자신을 자녀의 미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⁶⁾ 생부가 자녀의 미성년후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면, 그 다음에는 자녀를 대리하여 성·본창설 허가 청구를 한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청구를 하여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자녀가 원고로서 생부를 피고로 하여 인지청구를 하여야 한다(이 때 다시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인지소송의 피고인 생부가 원고인 자녀의 인지청구를 대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생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창설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각각 부와 자녀로 기재된다.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재판절차를 거쳐 부자관계를 창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자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⁷⁾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아래에서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3)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생부의 출생신고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5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57조 제2항부터 제59항까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⁸⁾ 이에 따라 생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제57조 제2항). 이 규정이 신설되었을 때만

4) 한겨레신문 2013년 11월 28일, “사라진 엄마 ... 출생신고도 못하는 아기, 입대 앞둔 아빠는 이별의 편지를 썼다.”

5)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위하여 출생 후 1년 동안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나(여성가족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방법」 참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적용조치 아동 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6) 사건본인인 자녀는 출생신고 전이므로, 보통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한다. ‘김00 (2012. 4. 10. 15:07 목포시 옥암동 977-2에 있는 미즈아이병원에서 출생, 남자’, ‘박00 (2015. 12. 20. 생, 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53길 0-0, 202호’.

7) 출생신고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은 우리에게 비하여 출생신고 기간이 훨씬 짧다. 예: 독일 7일(독일 신분등록법 제18조), 프랑스 3일(프랑스 민법 제55조, 제56조), 일본 14일(일본호적법 제49조), 오스트리아 7일(오스트리아 신분등록법 제9조) 등.

해도 이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상황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서는 생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생부가 모의 성명 정도만을 아는 경우에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⁹⁾ 모가 병원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생부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부 법원에서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의 성명을 보고¹⁰⁾ 생부가 모의 성명을 알고 있으니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 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것이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생부와 자녀의 문제는 오늘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¹²⁾

(4) 생부의 출생신고와 민법상 친생추정제도

2011년 가족관계등록선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생부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단히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가족관계등록선례의 제정 이후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생부의 출생신고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부가 후견인(또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자녀에 대한 성·본창설 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받고, 또 인지청구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

관계를 창설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법원에 따라서는 생부가 모의 성명만을 아는 경우에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서 생부의 출생신고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제출하여 부자관계를 증명한 경우에 출생신고를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아무런 대안도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아이의 장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와와의 관련성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¹³⁾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따르면, 모가 생부의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다면, 그 자녀는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우선 모의 남편을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한다(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와 모의 남편, 즉 법률상의父子다). 이런 경우에 생부가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수리된다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가 아버지로 기록되는데, 이는 민법상 친생추정규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생부의 출생신고는 모가 임신 당시 다른 남자와 혼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외에는 수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이러한 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모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임신 당시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는데

8) 미혼부였던 김지환씨가 위와 같은 재판절차를 거쳐 딸과의 부자관계를 창설하였는데, 성·본창설 허가 심판에서 딸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기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 일명 ‘사랑이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9) 서울남부지법 2017. 1. 10. 2016브4 결정 등; 이와 달리 모의 인적사항의 일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확인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정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2019. 4. 8. 2017브506 등. 이와 같이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의 일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확인 신청을 인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의 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10)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11)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의해 제57조 제2항이 신설된 이후 2019년까지 생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한 건수는 705건이며, 이중 457건이 인용되었다. 연도별 인용율은 다음과 같다. 2016년 83.4%(187건 접수/156건 인용), 2017년 75%(144건 접수/108건 인용), 2018년 66.7%(141건 접수/94건 인용), 2019년 71.6%(115건 접수/83건 인용).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20. 2. 12. 전산자료).

12) 중앙일보 2019년 11월 22일, “아빠가 미안해...엄마 이름 안다고 출생신고도 막힌 미혼부들”; KBS 시사기획 창, “나, 태어나도 될까요?(2020. 2. 8.) 보도 참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도 남인순 의원안, 서영교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 김수민 의원안 등 4건의 법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13) 2011년에 모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법원의 선례가 변경된 이유로 결국 모의 혼인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수리하면 친생추정규정과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친생추정규정과 충돌을 피한다는 명분하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자녀의 인권과 복리는 완전히 관심에서 사라진 것이다.

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¹⁴⁾에도 일단 출생신고를 수리하
되, 추후에 모가 혼인 중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가
족관계등록법은 제57조 제4항에서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는 신고의무자(모와 모의 남편, 즉 법률상의 父)가 1개월 이내
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생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모가 임신 당시에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다는 사
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자녀는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
므로, 모 또는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은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야 하고, 모의 남편이 자녀의 부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성명)만을
알고 있어서 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 당시 모의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부의 출생신고를 일단 수
리하는 것이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이든 모의 인적사항 중 성명만을 알고 있는 경우이든 모
를 특정할 수 없어서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상태를 확
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두 사안을
다르게 처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 개정된 가족
관계등록법 규정은 모가 임신 당시 혼인 중이었는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자녀가 생부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추정되는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단 생부의 출생신고를 수리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생부가 모의 인적 사항을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일부 법원의 태도는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모가 임신 당시 혼인 중
이었는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단 생부의 출생신고를
수리하더라도 민법상 친생추정규정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모가 임신 당시 혼인 중이 아니었다면 생부의
출생신고는 실체에 부합하는 것이고, 만약 모가 임신했을 때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친생추정규정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생부의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
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 확인 신청이 인용되어 출생신고가 수
리되었을 때 민법상 친생추정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
다는 개연성과 확인 신청을 기각하여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필연성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는 스스로 분명해 보인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모가 임신 당시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는
경우이다. 실제로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족공동체를 형
성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신분의 변동(자녀의 신분은 생부의
자녀에서 모의 남편의 자녀로 변경된다)은 생부와 자녀로 구
성된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함으로써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발생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키고, 다시 인지를 할 수 있는 길
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부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함
으로써 그 사이에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부
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함으로써 생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
을 보호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차를 바꾸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I. 생부의 친생부인권

1.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배제하는 근거

-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 -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에게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생부에게는 친생부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
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왔다: 혼인상태
에 있는 모가 혼외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그 사이에서 일단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다(제844조). 물론 이런 경우에는

1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은 “부가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
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를 특정할 수 없어서
모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수리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 또는 모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생부인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발생한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모와 모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이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가정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자녀의 복리도 실현되고 가정의 평화도 보호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에서 생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민법이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해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기본적으로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변화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민법의 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의 행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를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복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가 현실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2.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1) 자녀의 복리 실현에 기여하는 경우

모가 혼외관계에서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으로 한정하여 본다면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와 모의 남편이 이와 다른 선택을 한 경우(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모가 정해진 경우)에는 모 또는 모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굳이 생부에게 독자적인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특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생부에게 독자적인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모와 모의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해소되거나 파탄되었고 자녀의 양육은 제3자(생부, 위탁가정, 아동보호시설, 친족 등)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모나 모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녀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생부가 이미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독자적인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 하에서는, 모의 남편과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으며,¹⁵⁾ 따라서 자녀를 인지할 수도 없다. 생부가 인지를 하지 못하여 법률상 아버지의 신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굳이 긴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직접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부에게 독자적인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친생부인권자인 모와 모의 남편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소재불명인 경우,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어서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도,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판결확정 후에 자녀를 인지할 수 있으며, 친권자가 되어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다.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생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5) 학설(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298면 이하 참조)과 판례(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므637 판결)에 따르면 동거의 결여로 인하여 모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생부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가 생부와 관계에서 임신할 당시에 남편과의 동거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또한 설령 임신 당시 모와 그 남편 사이에 동거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생부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례와는 별도로 생부에게 독자적인 친생부인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2) 사회현실의 변화

- 적극적인 양육의지를 가진 생부의 증가

생부의 친생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생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되면, 생부는 독자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녀와 법률상의 父 사이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킨 후 그 자녀를 인지하여 새롭게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생부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과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반대로 생부에 의한 친생부인권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법 제정 당시는 물론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혼인외의 자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양육하려는 생부의 존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생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사회현실은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도¹⁶⁾ 대략 2010년 무렵을 기점으로 하여 자신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양육하려는 생부들이 사회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⁷⁾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신설된 것은 이와 같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 관련하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부들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체를 결성하기도 하였는데,¹⁸⁾ 이 역시 생부들의 변화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한 사회현실은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민법의 태도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예외 없이 배제하는 경직된 규정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사회의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행사의 구체적 기준

위에서 생부의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논거가 생부에게 제한 없는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녀가 그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에 반할 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 그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래에서 이러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보기로 한다.

(1) 실질적인 부자관계의 존부

혼인상태에 있는 모가 혼외관계에서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모의 남편과 자녀 사이에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성립한다. 모의 남편은 자녀의 출생과 함께 법률상 父의 신분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이 곧 실질적인 부자관계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의 부가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법률상의 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자 사이에 혈연관계(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보다는 가족공동생활과 양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대관계, 즉 실질적인 부자관계의 존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허용

16) 외국에서도 우리에게 앞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부들이 나타났다. Helms, Vaterschaftsanfechtung durch den Erzeuger des Kindes?, FamRZ 1997, 913; Stein-Hilbers, Biologie und Gefühl-Geschlechterbeziehungen im neuen Kindschaftsrecht, ZRP 1993, 256/258.

17) 물론 2010년 전에도 자신의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하는 생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2018년 현재 미혼의 생부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9,066명이다(미혼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수는 24,969명이다. 미혼의 생부는 2017년 기준으로 8,424명이다).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참조.

18) 2019년 6월 설립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한국 미혼부 가정지원협회(대표 김지환).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은 이미 여러 나라의 입법례에 반영되어 있다. 우선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독일민법 제1600조를 들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04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처음으로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었는데,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가 허용된다. 즉 생부는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률상의父가 자녀에 대하여 사실상 양육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부의 청구는 기각된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프랑스¹⁹⁾에서는 자녀(모가 혼인 중에 제3자와의 혼외관계에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모의 남편(법률상의父)의 자녀로 출생등록이 되고 모의 남편이 실제로 아버지로서 양육책임을 이행하여 자녀와 법률상의父 사이에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녀가 모의 남편의 자녀로서 신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이른바 신분점유 제도).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5년간 지속되면 모의 남편, 모, 자녀, 생부 등 그 누구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프랑스민법 제333조 제2항). 반면에 자녀가 모의 남편(법률상의父)의 자녀로 출생등록은 되었으나, 법률상의父가 실제로 아버지로서 자녀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신분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²⁰⁾에는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에 생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은 누구나 10년 간²¹⁾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334조, 제321조).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자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는 입법태도는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모의 남편과 자녀 사이에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는 없으나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모의 남편이 아버지로서

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여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때 자녀의 복리도 실현되고 가정의 평화도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생부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제3자, 낯선 타인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법률상의父가 자녀의 양육을 거부하고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서 실질적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허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혈연과 일치하지 않는 법률상의 부자관계 -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존재하는 부자관계 - 를 형식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생부와 의 관계에서 새롭게 부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되,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부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 생부의 권리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자관계의 존재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녀의 복리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가 유력하다.²²⁾

(2) 자녀의 복리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가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마찬가지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실현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²³⁾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

19)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 프랑스법계 국가들도 프랑스와 유사한 신분점유제도를 가지고 있다.

20) 예를 들어 모가 혼인 중에 임신, 출산하여 자녀가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등록이 되었으나, 그 후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父)이 이혼하고 모가 단독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모의 남편은 자녀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신분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1) 10년의 기간은 자녀가 그 신분을 향유하기 시작한 날(자녀로 출생등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

22) Wellenhofer, Die Schranken des Anfechtungsrechts des leiblichen Vaters gem. § 1600 II, III BGB, NZFam 2017, 898/901; Coester-Waltjen, Statusrechtliche Folgen der Stärkung der Rechte der nichtehelichen Väter, FamRZ 2013, 1693/1698f.; Helms, Die Stellung des potenziellen biologischen Vaters im Abstammungsrecht, FamRZ 2010, 1/7.

23) Wellenhofer-Klein, Das Vaterschaftsanfechtungsrecht des leiblichen Vaters - Vorschlag zur Änderung von § 1600 BGB, FamRZ 2003, 1889/1891.

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제시하는 견해는 실질적 친자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실질적인 친자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론은,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비록 혈연관계는 없지만 사실상의 양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도 실현하고 가정의 평화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인 친자관계의 존부는 자녀가 출생한 후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자녀의 출생 직후라든가 출생 후 비교적 단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²⁴⁾ 사실상의 양육과 가족공동생활을 통하여 형성되는 실질적 친자관계는 상당한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출생 직후나 출생 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자녀와 법률상의父 사이에 실질적 친자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²⁶⁾ 그러나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父)이 합의하여 가정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해 볼 때,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실질적 친자관계의 존재를 친생부인권 행사의 제한 요건으로 규정하는 법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²⁷⁾

다른 한편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실질적 친자관계의 존재를 규정하는 입법례(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생부와 자녀 사이에 발생한 실질적인 친자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²⁸⁾ 혼인상태에 있는 모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제3자(생부)와 사귀던 중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였고, 몇 달 후 자녀를 생부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약 1년 후 남편과 화해하여 그 자녀를 함께 양육하기로 했다고 하며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²⁹⁾ 이런 경우에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실질적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입법례에서는, 이와 같이 생부와 의 관계에서도 실질적 친자관계가 중첩적으로 형성된 경우에 생부와 자녀 사이에 발생한 실질적 친자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실질적인 친자관계만을 기준으로 하여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일률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실질적 친자관계와 생부와 자녀 사이에 발생한 실질적 친자관계를 비교하여 어느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 실현에 기여할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³⁰⁾ 즉 자녀

24) Arbeitskreis Abstammungsrecht, Abschlussbericht, Empfehlungen für eine Reform des Abstammungsrechts, 2017, S. 28.

25) Höffmann, Das neue Gesetz zur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Anfechtung der Vaterschaft und das Umgangsrecht von Bezugspersonen des Kindes, FamRZ 2004, 745/746; 독일에서는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단기간(예를 들어 1년) 내에는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의 실질적 친자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는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는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 친자관계가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Verhandlungen des 71. Deutschen Juristentages Essen 2016, Bd.II/1, 2017, P 66; Arbeitskreis Abstammungsrecht, Abschlussbericht, Empfehlungen für eine Reform des Abstammungsrechts, 2017, S. 53; Helms, Rechtliche, biologische und soziale Elternschaft-Herausforderungen durch neue Familienformen, Gutachten F zum 71. Deutschen Juristentag, 2017, F 51.

26) Roth, Vaterschaftsanfechtung durch den biologischen Vater, NJW 2003, 3153/3159; Hager, Der rechtliche und der leibliche Vater, in: Festschrift für Dieter Schwab, 2005, S. 774; Arbeitskreis Abstammungsrecht, Abschlussbericht, Empfehlungen für eine Reform des Abstammungsrechts, 2017, S. 28.

27) Frank,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en zur Vaterschaftsanfechtung durch den leiblichen Vater des Kindes, in: Festschrift für Dieter Schwab, 2005, S. 1132.

28) Wellenhofer, Die Schranken des Anfechtungsrechts des leiblichen Vaters gem. § 1600 II, III BGB, NZFam 2017, 898/900.

29)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다루었던 사례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것임. BVerfG FamRZ 2014, 191, Anm. Helms, FamRZ 2014, 277.

30)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외국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OLG Hamm, FamRZ 2016, 2135f.도 이러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와 중첩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Lönig, Anfechtung der Vaterschaft durch den leiblichen Vater – vorrangiges Elternrecht des rechtlichen vor dem leiblichen Vaters, NJW 2018, 906/908.

의 복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 요소(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의 관계, 생부와 자녀 사이의 관계, 자녀의 연령, 자녀의 양육 적합성, 자녀의 모와 법률상의 부 사이의 혼인관계의 안정성 등)를 고려하여 생부의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³¹⁾ 일반적으로 법률상의父는 모와의 혼인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때에만 자녀의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자녀의 모와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법률상의父가 적지 않다) 자녀의 모와 법률상의 부의 혼인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도 하나의 판단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친자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물론 실질적 친자관계의 존부는 자녀의 복리라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가족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유럽인권법원이 생부의 친

생부인권 행사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³²⁾

4. 외국의 입법례

생부의 친권부인권에 관하여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나라(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가 있는가 하면,³³⁾ 생부에게 기간의 제한이 없는 친생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노르웨이,³⁴⁾ 러시아³⁵⁾). 이 두 나라에서는 생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때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친자관계나 자녀의 복리는 고려되지 않는다.³⁶⁾

한편 독일과 벨기에와 같이 절충적인 태도를 취한 입법례도 있다.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독일민법에 따르면 생부는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600조, 1600b조). 벨기에민법에 따르면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

31) 독일민법은 이미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600a조 제4항).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의 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대리하여 친생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 때에만 청구를 인용한다. MüKoBGB/Wellenhofer BGB § 1600a Rn. 16.

32) Nr. 304 EuGHMR – EMRK Art. 8; franz. code civil(a. F.) Art. 339. Anm. Frank, FamRZ 2016, 530.

33) 오스트리아에서는 모의 남편과 자녀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된다(오스트리아민법 제151조). 다만 생부에게는 (자녀가 모의 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와 모의 협조를 받아 자녀를 인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오스트리아민법 제147조). 스위스도 모의 남편과 자녀에게만 친생부인권을 인정한다(스위스민법 제256조). 생부는 후견청에 대해서 자녀를 대리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부의 시도는 법률상 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Aebi-Müller, Streit um die Abstammung – Länderbericht Schweiz, in: Spickhoff/Schwab/Henrich/Gottwald(Hrsg.), Streit um die Abstammung, 2007, S. 359f. 스웨덴에서도 법률상의父(모의 남편)와 자녀에게만 친생부인권이 인정된다(스웨덴친자법 제3장 제1조, 제2조). 생부의 부성 확인(자신이 자녀의 생부라는 확인)에 의해서 친생추정이 반복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생부의 부성 확인이 법률상의父(모의 남편)와 모에 의해서 서면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부의 부성 확인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스웨덴친자법 제1장 제2조). 사회복지위원회는 부성 확인을 하는 남자가 자녀의 유전적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때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 Singer, Between genetic and social Parenthood – A legal dilemma: Establishment of legal parenthood in Sweden, in: Spickhoff/Schwab/Henrich/Gottwald(Hrsg.), Streit um die Abstammung, 2007, S. 141f.

34) 2002년 노르웨이 친자법 제6조.

35) 1995년 러시아 가족법 제52조.

36)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입법자는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혈연관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해결책이라는 인식에 입각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Lødrup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Lødrup, Challenges to an Established Paternity – Radical Changes in Norwegian Law, in: The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03, 353).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child that the man who is the biological father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 legal father, even if it means that an existing father’s parenthood is challenged.”

나 자녀와 법률상의父 사이에 실질적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신분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벨기에민법 제318조 제1항).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법률상의父의 자녀로서 5년간 신분을 점유한 경우에는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런 경우에는 생부뿐만 아니라 모, 모의 남편, 자녀 등 다른 제소권자도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프랑스민법 제333조 제2항). 따라서 생부는 신분점유 기간이 5년에 이르기 전까지는(자녀가 출생 시부터 법률상父의 자녀로서 신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³⁷⁾라면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생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때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의 실질적 친자관계의 존부나 자녀의 복리는 고려되지 않지만 기간의 제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서는 생부가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때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의 실질적 친자관계의 존부는 고려되지 않지만, 법률상의父의 자녀로 출생등록이 된 때부터 1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슬로베니아 혼인가족법 제99조). 그리스민법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실질적인 친자관계는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지만, 생부³⁸⁾는 자녀의 출생 후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그리스민법 제1469조 제5호, 제1470조 제5호).³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면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⁴⁰⁾ 한편 생부의 친생부인권이 어떠한 요건 하에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법 경향을 찾기 어렵다(다만 나라에 따라 각각 다양한 규정을 두면서도 그 저변에는 자녀의 복리 실현이라는 공통된 가치가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생부의 친생부인권에 관하여 어떤 규정을 마련했을 때 자녀의 복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각 나라의 입법자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생부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고 할 때, 위에서 본 외국의 입법례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자녀의 복리실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서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유전자검사 결과 생물학적인 부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생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처음부터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종래의 호적선례는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모불상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에 법원이 새롭게 가족관계등록선례를 제정하면서 모불상의 출생신고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 이후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어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는 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의 확인

37) 자녀가 출생 직후 법률상의父의 자녀로 출생등록이 되고, 양육과 가족공동생활을 통하여 법률상의父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8) 자녀의 모가 임신 시기에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생부로 추정되는 자가 자녀의 모와 그 무렵 지속적으로 성적 교섭을 가진 경우에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된다.

39) 이러한 나라들은 자녀의 출생 후 1년 내지 2년이라는 비교적 단기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실질적 친자관계가 확고하게 형성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부의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Novak, Das Abstammungsrecht in Slowenien, in: Spickhoff/Schwab/Henrich/Gottwald(Hrsg.), Streit um die Abstammung, 2007, S. 267; 그리스민법에 따르면 생부는 자녀의 출생 후 2년 내에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모의 남편은 자녀의 출생 사실과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때부터 1년간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자녀의 출생 후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친생부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스민법 제1470조 제1호).

40)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과 같이 생부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생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각주 33 참조).

신청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성명)만을 아는 경우에는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과 제4항을 연결하여 해석해 보면,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하는 경우이든 일부만을 알지 못하는 경우(성명은 알지만 나머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든 모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임신 당시 모의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단 출생신고를 수리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일단 생부의 출생신고를 수리하되, 그 후 모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 임신 당시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녀는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모 또는 모의 남편이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라는 것이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과 제4항의 취지이다. 생부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후에 모가 임신 당시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민법상 친생추정규정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와와의 충돌을 우려하여 생부의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아예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자녀의 복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민법상 친생추정에 부합하지 않는 출생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정정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민법상 친생추정규정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아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여야 하는가는 스스로 분명해진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해석론을 정립하여 법원에 따라 상반된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한 후에 모가 임신 당시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녀는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법률상의 부가 생부에서 모의 남편으

로 변경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고 생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생부와 자녀 사이에 다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 민법상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시작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 모나 모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생부에게 인지의 기회가 올 수 있겠지만, 모나 모의 남편이 자녀에게 관심이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생부는 자녀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생부에게 독자적인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굳이 이러한 사안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부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생부의 친생부인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를 해친다는 데 있었다.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녀가 그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가정의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로 한정해 본다면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태도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실이 변화하면서 이와 같은 전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생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고 양육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 들어와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인지하고 양육하려는 의지를 가진 생부들이 우리사회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모와 모의 남편(법률상의 父) 사이의 혼인 관계가 해소 또는 파탄되었고, 모의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변화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생부의 친생부인권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가정폭력상담실

행위자 상담



상담 통해 대화법 익혀 폭력적이었던

부부싸움 반성하면서 비폭력적인 대화 실천해

사건번호 2018버6** 폭행,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1회, 전화상담 2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14회 실시

상담기간

2018. 7. 3. ~ 2019. 6. 18.(보호처분 변경 1회)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1년 되었으며 부부사이에 2남(22세, 16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8년 3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교회에서 남자고등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등을 폭행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전날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리치는 손괴를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초상담에서 교회 중등부교사였던 피해자가 반학생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본 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오랜 기간 기도하여 결혼하였기에 이혼할 의사는 없다고 하였다. 초상담 후, 이혼 사건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 부부상담을 권하였고 부부 모두 이를 수락하여 부부상담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

런데 상담위탁 보호처분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생업에 영향이 있다는 점을 이혼소송 담당재판부에 호소하였고 담당재판부가 상담위탁 보호처분 면제 가능성을 안내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본소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하고 법원의 부부상담 계획이 확정되면 상담자와 연락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상담기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행위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동안 2회에 걸쳐 조사관 조사를 받았고 부부상담을 위하여 대기 중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여 년간 상습적인 행위자의 폭언, 폭력이 있었기에 이혼의사가 확고하지만 법원의 권유가 있으므로 부부상담에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행위자가 교회 학생과의 일을 의심한 것은 이미 해명이 되었고,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학대학원 입학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행위자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부부상담 진행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경과한 탓에 부득이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하였다. 행위자는 생업 때문에 집단상담 등 다른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불가능하였기에 월 2회 개별상담에 임하도록 하였다. 보호처분 변경 직후 행위자는 생업과 재판 대응 등의 이유로 상담 출석률이 높지 않았는데, 이혼재판부에서의 부부상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4월 말경 재개한 상담에서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나 원망의 마음은 많이 누그러져 있었으나 이혼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이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종결상담 즈음, 행위자는 이혼사건 재판부의 가사조사관이 둘째 아들을 만나보겠다고 하자 아들이 받을 상처를 염려해 이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고,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도 비교적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별상담 시 시청각교육을 통하여 아들이 피해자의 행동은 직접 보지 못한 반면, 행위자의 폭력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 행위자에게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한 점이 행위자의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한 행위자에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희망은 바로 자녀와의 관계였다. 상담과정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행위자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하였다. 행위자가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다행이었는데, 종결상담 10일 후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사건번호 2018버1*** 폭행, 감금
2018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부부상담 12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8. 7. 16. ~ 2019. 7. 2. (보호처분 변경 1회)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5세, 3세)이 있다. 2018년 4월 사건당일 남편은 이혼 및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아내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려는 아내를 출입문 앞에서 막아서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아내는 이에 맞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남편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다시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간 폭력을 하여 부부는 각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남편이 의식을 잃고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휴대폰 위치추적으로(남편이 아내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 유홍가 뒷골목의 모텔이 나오자 성매매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 막대기로 때렸고, 다음 날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초상담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건 이후 부부는 화해를 하였고, 부부갈등의 원인이었던 음주문제 개선을 위한 남편의 노력이 이행되고 있었다. 남편은 소주 대신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맥주를 마시며 음주량과 횟수를 줄여 아내의 만족도가 높았다. 아내는 지금처럼만 지내면 좋겠다고 하였고, 남편 역시 아내에게 더 바라는 바는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부는 초상담 이후 상담에 임하지 않아 보호처분 변경을 하게 되었고 6개월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보호처분 기간 연장 후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실천과제를 점검한 결과, 남편은 자신의 절주를, 아내는 남편에 대한 믿음을 꾀었으며 남편의 절주 노력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부부는 대화법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폭력적이었던 부부싸움 방식을 반성하고 비폭력적인 대화를 실천하였다. 아내는 강요형의 대화를 반성하고 청유형의 대화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남편은 아내의 실천으로 다들 일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내는 육아스트레스 등으로 짜증을 잘 내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였고, 남편은 아내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요청이 있을 때 전과 달리 아내와 의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부부는 가정이나 부부문제에서 갈등요인을 줄였고,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 아내는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1점, 현재는 9점으로 평가하고, 특히 남편이 가정 밖의 생활을 좋아하고 밖으로 돌았는데 지금은 가족,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남편에게 법이 무서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남편은 후자라고 답하였다. 아내는 1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편의 단주를 바랐다. 남편은 상담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1점, 현재는 6점으로 평가하고, 이전에 비해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을 느꼈으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아내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아내는 상담을 마친 후 제과 제빵을 배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Q ▶▶▶

10년 전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더니 지금은 일주일 내내 나가 육아는 물론 살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수시로 금식기도를 한다면서 일주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출근을 못한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재산과 월급관리도 아내에게 모두 맡겼는데 통장 잔액이 전혀 없어 물었더니 교회에 모두 헌금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다르게 교회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고 심지어 가족들을 버려야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며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그만 다니라고 설득도 하고 화도 내 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더 이상은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이혼은 싫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A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헌법 제20조),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1.7.14. 선고 81므26판결)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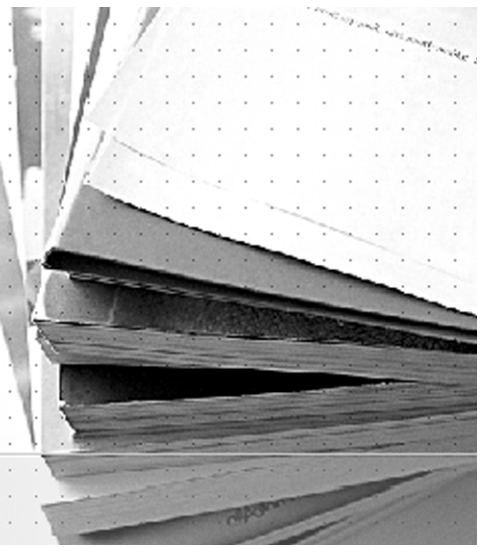
그러나 한편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

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귀하의 아내는 교회활동과 금식기도 등으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귀하와 의논 없이 부부공동재산마저 본인의 신앙을 위해 탕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김진영 상담위원

좋은 책



주말 아침, 신문의 특집 기사를 느긋하게 읽다가 너무 인상적인 부분이어서 사진을 찍어 두었다. 이 '기특한 젊은이'는 '기특한 젊은이'에 갇히지 않고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자각을 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제가 딸이었으면 규정이 더 많았겠죠. '이래서 딸 낳아야 된다' '딸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아무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적 감정의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돌봄을 공적인 영역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죠."

열두 살에 부모는 이혼을 했다. 한 살 아래 여동생은 엄마와 떠나고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와 둘이 남았다. 영화감독이 되고 싶고, 댄서, 작가도 되고 싶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학은 애초에 생각도 없었지만, 열심히 해서 학력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다짐은 했다. 이렇게 "뭐라도 해보려던 스무 살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이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저자 조기현이 치매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보고 있는 9년간의 기록이다. 이 청년은, 청년들이란 학자금 대출로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 정도를 청년 문제의 거의 전부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의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젊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아직 병원의 보증인도 못되는 스무 살의 나이에 병원 원무과로 주민센터로 종종걸음을 치며 청년은 "불쌍한 존재가 돼야 하고, 불쌍한데 착해야 하고, 그래서 지원이 더 의미 있어야 한다. 내 삶 전체를 가난으로 설명하고, 그 삶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프게 알게 된다. 그리고 군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아빠를 집에 두고 군 복무를 대

신해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스무 살에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는 아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의 눈으로 본 아빠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노동 현장에서 일을 빠르고 잘 하는 게 유일한 인정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제 일을 못 하는 사람 무엇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지나가는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꼭 옆에서 들어주던 사람, 엄마가 집을 나가자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혼자 곳곳이 가사노동을 하던 모습" 그리고 그는 또 말한다. "아버지하고 함께한 시간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세상이 다 권유하지만, 긍정하려는 노력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 아빠를 대신하는 '대리자', 국가 공인 '부양 의무자'가 되고, 어려움 속에 부모를 돌보는 '효자'로 불리면서, 치매 걸린 61년생 아버지와 90년대 생 아들, 2인분의 삶을 떠맡은 '가장'으로 살고 있다. 돈, 일, 질병, 돌봄, 돈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가난을 증명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이 청년은 국가와 사회에 묻는다. 아픈 가족은 누가 돌봐야 공정할까?

이런 시간을 살아내면서 자신을 길을 찾고 있는 이 젊음에게 그저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세상이 이런 젊음에게 좀 더 친절하기를 바라고, 그 책임이 기성세대인 내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아프게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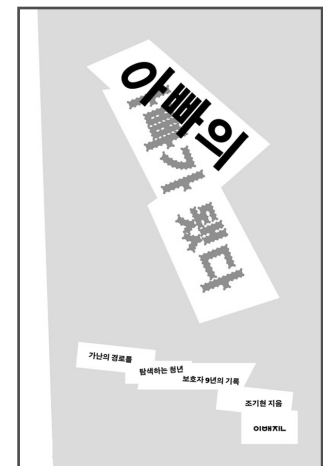
이 숙 현 편집부장

아빠의 아빠가 됐다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 보호자 9년의 기록

조기현 지음

이매진, 2020



결혼과 인생 (206)



작은 아씨들

감독 그레타 거윅

출연 시얼샤 로넌, 엠마 왓슨, 엘리자 스캔런, 플로렌스 퓨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여성들이라면 마음의 친구로 빨강머리 앤과 조 마치를 꼽을 수밖에 없다. 소녀가 전면적인 주인공으로 나서는 한국 동화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과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은 아이들 용으로 개작되어 '세계 명작 동화'로 널리 읽혔다.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의 틈에서 빠져나와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앤 설리와, 가족 구성원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가난을 이겨내며 작가로 성장하는 조 마치라는 말괄량이 소녀들의 이야기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애들에게 이 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868년 첫 출간된 이래 단 한 번도 절판된 적 없이 우리 시대 수많은 여성들의 애착의 대상이자 고전이 되었던 그 소설 <작은 아씨들>이

이번에 새롭게 영화화되었다. 가깝게는 1994년 영화 버전에서도 질리언 암스트롱이 연출을 맡고 수전 서랜든, 위노나 라이더, 커스틴 던스트 등의 호화 배역으로 완성된 바 있다. 유명 배우들이 바쁜 스케줄을 뒤로 하고 이 영화에 기꺼이 참여하길 열망했던 모습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연출 데뷔작 <레이디버드>(2018년)로 골장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엄청난 호평을 받았던 그레타 거윅이 연출을 맡았고, 시얼샤 로넌과 엠마 왓슨, 플로렌스 퓨처럼 현재 동세대 배우 중 최고로 인정받는 젊은 배우들과 함께 로라 던, 메릴 스트립 같은 베테랑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영화 내용을 이끌어가는 여성들의 힘을 고스란히 현실화시켰다.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남북전쟁에 참전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로라 던)가 가게를 이끄는 마치가. 예쁘고 다정한 첫째 메그(엠마 왓슨), 자존심이 세고 작가를 꿈꾸는 둘째 조(시얼샤 로넌), 수줍음 많고 신앙심 깊은 셋째 베스(엘리자 스캔런), 욕심꾸러기라고 놀림 받지만 화가의 꿈을 키워나가는 막내 에이미(플로렌스 퓨) 등 네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더 힘든 이웃을 돕고 각자의 관심사에 몰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어린 시절부터 조가 연극 각본을 쓰고 메그, 베스, 에이미가 배우로 출연했다. 조에게는 이런 네 자매의 협업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성인이 된 메그가 가난한 가정교사와의 결혼을 선택하고, 조는 “언니는 배우

가 될 수 있다”며 여기 안주하지 말고 같이 도망치자고 애원하지만, 메그는 “내 꿈과 네 꿈이 다르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라고 답한다. 혹은 피아노 치는 순간을 가장 행복해하던 베스가 재능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전염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갈 때 조는 신의 불공평한 처사에 분노하지만, 베스는 삶의 흐름에 순응하고자 한다. 에이미는 프랑스에서 그림을 배우지만 결국 ‘최고의’ 화가가 될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선택한다. 결국 조만이,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끈기 있게 노력을 펼쳤던 조만이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다.

물론 조 마치야말로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분신이며 원작을 읽는 소녀들의 롤 모델이다. 하지만 소설과 영화 모두 메그와 베스, 에이미의 선택과 결말에 대해서도 절대 편협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리거나 봉사하는 삶의 비극적인 결말에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본다. “여자에겐 사랑만이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지겨워”라고 소리치던 조마저도 결국엔 “혼자 여서 외롭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상황마저도, 그것이 투항이라거나 타협이라는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조는 자신의 글을 읽은 뒤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로서의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자신의 가정을 교육에서 배제되기 십상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새롭게 변화시킨다. 직업적 예술가가 되었던 되지 못했든, 조와 다른 자매들은 모두 힘을 합쳐 타인의 삶이 예술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신들의 삶 또한 풍요롭게 가꿔나간다.



영화 <작은 아씨들>은 19세기 중반의 원작이 가지는 보수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작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않았다. 아마도 작가를 꿈꾸는 조의 활기를 좀 더 현대적인 시선으로 강화시킨 게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디테일 덕분에,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자매들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조의 성장 과정이 현대의 관객들에게 훌륭한 진입로 역할을 담당한다. 좋은 각색은 고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든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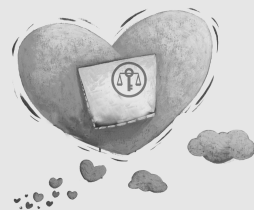
후원 고맙습니다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권지연, 최은아, 김도윤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박미라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2020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27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한 객배회 소장의 연임과 한미영·최문원 감사를 유임하는 것에 대해 인준하였으며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날 총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회원인 직원들이 참석하고 다른 회원들은 우편을 통해 위임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직원 재교육 실시

3월 13일 본소 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의 직원 재교육이 열렸다. 본소는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확대하고, 상담자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한 편 문화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정기적으로 직원 재교육을 갖고 있다.

이번 직원 재교육은 「1949년 ‘작은 아씨들’ 영화에 나타난 미국사회의 변화가 가족·여성의 삶과 가치관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작은아씨들’은 미국의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이 1868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자유·박애·평등·민주주의 정신에 기

초하여 가부장적이고 정형화된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던 사회에 대항해 꿈과 사랑을 이뤄가는 네 자매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나간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동 영화의 감상은 작품 발표 후 14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적 의식의 잔재와 사회변화에 따라 좀 더 발전적으로 변모해온 가족과 여성의 삶 속에서 견지되어야 할 가치관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되었다.



가정폭력의식개선교육 동영상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영어자막 삽입본 제작

본소는 가정폭력의식개선교육 동영상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의 영어자막 삽입본을 제작하였다.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본소에서 지난 2016년에 삼성생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가정폭력의식개선교육 동영상이다. 가정폭력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의 개념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비폭력적 태도를 가지는 데 지향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 본소를 찾거나 가정법원에서 위탁되는 가정폭력행위자 중 영어권 내담자가 늘어남에 따라 영어로 된 교육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이에 본소는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삽입하기로 하고, (주)두물머리픽처스와 함께 텍스트화된 음성 내레이션과 배우들의 대화 등을 영어로 번역하여

자막으로 삽입한 리뉴얼영상을 제작 완성하였다. 본 동영상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정폭력예방 교육자료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상반기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지난 3월 10일 조기 완수하였다.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본소 방문

지난 3월 20일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한두진 경사와 오으뜸 순경이 본소를 방문하여 객배희 소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관내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을 본소에 상담 의뢰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업무적으로 연계가능한지에 관하여 차연실 상당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본소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출장 법교육 및 순회상담

3. 4. 순회상담(전화상담) - 과천 여성 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3월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24일, 사법연수원의 2020년도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연수에서 53명의 연수법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상담의 실제」에 대하여 온라인강의를 하였다.

2020년 3월 상담통계

총상담 4,273				
법률상담 (4,028)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138	3,740	146	3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133	21		91	

* 인터넷 정보 이용 55,617

2020년 3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273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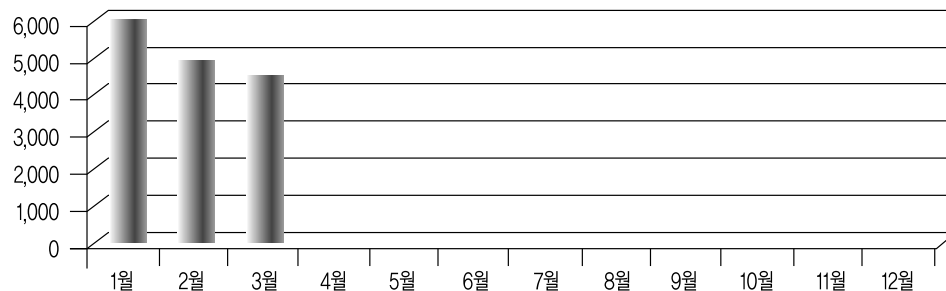
4,028건(94.3%), 화해조정 133건(3.1%), 소장 등 서류작성 21건(0.5%), 소송구조 91건(2.1%)이었다.

법률상담 4,02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4.3%→4.8%), 사실혼해소(1.3%→1.8%), 위자료·재산분할(10.9%→15.2%), 양육비(8.0%→9.9%), 인지(1.1%→1.2%), 파혼(0.2%→0.3%), 혼인무효·취소(0.6%→0.7%), 부양(1.6%→2.1%), 가사절차(4.9%→5.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1%→0.2%), 채권·채무(0.4%→0.6%), 파산(2.2%→2.3%), 개인회생(0.2%→0.4%),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1%→0.6%), 형사기타(0.3%→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02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38건(3.4%), 전화상담 3,740건(92.9%), 인터넷상담 146건(3.6%), 순회상담 3건(0.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가족 명의로 채무를 지고 가출한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168

담당 : 권혁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8세)와 피고(여, 75세)는 1974년 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1997년경 피고는 사업실패로 가출하여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전혀 왕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딸의 명의로 가계수표를 개설하여 가족에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만들었다. 아들도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9년 2월경 자살하였다. 원고는 생활고로 누나 집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정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2019. 11.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미혼모 시설장의 허위 취적허가로 창설된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법률구조 2019-271

담당 : 박성미 변호사

사건명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내용 : 신청인(여, 40세)은 사건본인(여, 17세)의 어머니다. 2003년경 신청인은 전북 익산의 미혼모 시설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쳤다. 출산 후 경제활동을 위해 사건본인을 시설에 맡겨두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

었을 때, 시설 책임자로부터 사건본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몇 년 후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취학통지서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노숙생활을 전전하고 있었던 터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2018년 신청인의 배우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마침내 전북 익산시 소재 한 시설에서 사건본인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미혼모 시설 책임자가 사건본인을 기아라고 하여 2005년 취적허가를 받아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것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9. 27)

1. 본적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생략 호주 김○○의 제적부(2008. 1. 1. 법률 제8435호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는 이중 제적부이므로 전부 말소하고,
2. 제1항의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된 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생략 사건본인 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므로 전부 폐쇄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294

담당 : 강소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54세)와 피고(남, 54세)는 1994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였

다. 피고가 소득 없이 고시 공부만 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피고는 자녀가 태어나면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1997년 첫째 자녀가 태어나도 계속하여 고시 공부만 하였다. 1999년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서 피고는 고시 공부를 그만 두고 강의를 시작했으나 수강생이 없어 강의를 계속할 수 없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피고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지만 피고는 강사만을 고집하였다. 2003년경 피고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더니 16년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2.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무시한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9-295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3세)은 2009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0세)을 두었으나, 2011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25일에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 신청인은 2015년 이후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최선을 다해 양육해왔다. 그러나 월 140만 원 남짓의 월급으로 생활비와 사건본인의 학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 1. 2.)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정법원 2010호0000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2011. 00. 00.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2019. 8.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4,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2.부터 2021. 9.까지 매월 말일에 20회에 걸쳐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338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7세)은 2008년경 동대문에 있는 한 상가에서 여성신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다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지난 상품들의 재고 발생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신청인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영업 및 광고에 매진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어 사무실 월세와 직원들 월급,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전 시문화 사업에 도전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카드대금 연체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아파트를 급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대금으로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매달 변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실패되고 말았다. 현재 신청인은 간헐적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나 월 평균 소득이 25만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신청인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2. 11.)

채무자를 면책한다.

장기간 별거한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98

담당 : 방선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4세)와 피고(남, 연령미상)는 199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일본에서 일본국적자인 피고를 만나 혼인하였다. 원고는 혼인 후 피고의 외도와 계속되는 상간녀의 전화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1994년경부터 피고와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는데 피고와 연락이 두절되어 영주 자격도 취득하지 못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일본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정리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11년경 원고는 한국에 입국했고,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2. 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01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4세)은 1989년경 무역 도매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몇 년 동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치러주지 않거나 거래처 공장이 부도로 폐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를 극복하고자 2004년경 사우나에서 가운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업주가 행방을 감춰 버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연이은 사업 실패로 신청인은 중국으로 이주하여 한국의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와 도소매로 팔기도 했지만 중국에서의 생활 또한 희망이 보이지 않자 2017년경 귀국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주차관리원, 경비원 등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을 배우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희망으로 지게차 운전면허, 1종 대형면허, 버스운전면허까지 취득하였지만 경력부족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놓지 않고 정부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1. 28.)

채무자를 면책한다.

**과거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던 부,
감치 신청 후 과거양육비 전액 지급**

법률구조 2019-440

담당 : 최강호 변호사

사건명 : 감치

내용 : 신청인(여, 37세)과 피신청인(남, 45세)은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6세, 남 14세)을 두었으나, 2005년 협의이혼 하였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이혼을 하면서 피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피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어렵게 양육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소득활동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본소의 법률구조를 통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 1,62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2018년 7월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다시 본소의 지원으로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직접지급명령 결정으로 인해 매월 양육비가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피신청인은 밀린 과거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행의무위반에 따른 법률구조를 요청하였고 감치 심문 종료 후, 재판 기일 직전 피신청인이 과거양육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사건은 취하되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